

의안 번호	2510	[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(안)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9.(화)

2. 제안이유

-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·관리하기 위해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5년도 이월액(A)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(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870,721	148,900	555,000	△406,100	464,621

나. 수입계획 : 148,900천원

- 수수료, 과태료수입 : 65,000천원
- 이자수입 : 10,900천원
- 보조금(간판개선사업) : 73,000천원

다. 지출계획 : 555,000천원

- 사무관리비 : 15,000천원
-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통신료 : 30,000천원
-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: 20,000천원
-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: 30,000천원
-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 지원 : 40,000천원
- 반구시장 간판개선사업 : 420,000천원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13조
-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으로
- 2026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
 -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407,483천원이 감액된 1,019,621천원으로 편성되었음
 -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
공공예금 이자수입 25,144천원 감액,
간판개선사업 시 보조금 35,000천원 감액,
예치금 회수 347,339천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407,483천원 감액편성 되었음
 -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

예치금인 보전지출 222,483천원 감액

옥외광고물 관리에 185,000천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407,483천원

감액편성 되었음

-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편성되어 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 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 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 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 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-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- 제6조(기금운용 계획)**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구의회" 라 한다)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